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78
----------	-----

제출연월일 : 2016. 1. 27(수)
제 출 자 : 박찬원 대표의원
찬 성 자 : 이범연, 함명섭,
장문혁, 임영순,
박종욱 의원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16년 2월 1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심 사 계 획

1. 활동목적

-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

3. 활동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4. 구 성

- 이범연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임영순 의원, 박찬원 의원

5. 운영계획

일 시	차 수	내 용	비 고
2016. 2. 1 (월)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특별 위원회 (13: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	